

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예산안 비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,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<u>준용한다.</u> 2.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<u>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 3.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<u>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.</u> 	<p>제15조(예산안 비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,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<u>적용한다.</u> 2.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<u>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 3.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<u>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.</u>